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24
----------	------

2024년 4월 25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상열 의원 (찬성자 35명)
- 나. 제안일 : 2024년 4월 3일
- 다. 회부일 : 2024년 4월 8일
- 라. 상정일 : 제323회 서울시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4년 4월 25일 상정·의결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상열 의원)

#### 가. 제안이유

- 2023년 9월 22일 시행된 「청년기본법」 과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회 청년참여 의무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청년인재정보 수집·관리 부서의 인재추천 사무 범위를 일부 조정하여 사업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청년친화위원회의 정의를 삭제함 (안 제3조제7호)
-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각종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과 청년위촉이 곤란한 위원회의 범위를 심의·조정 하도록 함 (안 제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 서울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1/10 이상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3/10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 (안 제10조제3항)
- 서울시 각종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을 정할 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함 (안 제10조의제4항)
- 청년인재정보 수집·관리 부서가 인재추천요청을 받았을 때 협조하도록 함 (안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4. 4. 12. ~ 4. 16.) 결과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3. 9. 22.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청년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으로 구분 필요성이 없어진 ‘청년친화위원회’ 정의를 삭제하고(현행 조례 제3조제7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과 청년 위촉이 곤란한 위원회의 범위를 추가하며(안 제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서울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함과 동시에 청년 의무 위촉이 곤란한 위원회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음(안 제10조제3항)
- 또한,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과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를 정할 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10조제4항), 청년인재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부서가 위원 추천을 요청받았을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안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 나. 검토 내용

#### (1) ‘청년친화위원회’ 정의 규정의 삭제(현행 조례 제3조제7호 삭제)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3조제7호의 ‘청년친화위원회’ 용어 정의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기본법」 제15조제2항의 개정(2023. 9. 22. 시행)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원칙적으로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청년친화위원회’를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없어졌음이 인정되고 관련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조문 삭제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b>7. “청년친화위원회”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중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개별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를 제외한다.</b></p> <p>8. (생략)</p>	<p>제3조(용어의 정의) _____</p> <p>1. ~ 6. (현행과 같음)</p> <p><b>&lt;삭제&gt;</b></p> <p>7. (현행 제8호와 같음)</p>

### 「청년기본법」

####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조정 사항 추가(안 제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과 개별사건을 다루거나 외교·국방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임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청년 위촉 비율 및 의무 위촉 제외 대상 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타당하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 3. (생 략) 4. <b>청년친화위원회의 범위 및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b> <u>&lt; 신 설 &gt;</u>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1. ~ 3. (현행과 같음) 4. <b>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b> 5. <b>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b> 6. (현행 제5호와 같음)

### 「청년기본법 시행령」

####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 또는 시·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2. 외교·국방·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
3.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성격·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② (생 략)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10분의 3 이상
2.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 1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 또는 시·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비율
3. 그 밖의 위원회: 10분의 1 이상

### (3) 각종 위원회의 청년 위촉 의무 규정 등(안 제10조제3항~제5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은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청년 위촉 의무와 위촉 비율을 규정하면서 이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으며, 절차 요건으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종합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청년 위원 의무 위촉에 관한 사항은 「청년기본법」 제1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10분의 1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등은 10분의 3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청년 위촉 비율을 10분의 3 이상으로 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도 지사가 정하는 위원회 등으로 규정함
- 또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청년 위원 위촉 의무에서 제외되는 위원회를 예시하고 있으며,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성격·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음

### 「청년기본법」

####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년기본법 시행령」

####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 ①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 또는 시·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 2. 외교·국방·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
  - 3.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성격·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정위원회
  - 2.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
    - 나.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
-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10분의 3 이상
  - 2.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 1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 또는 시·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비율
  - 3. 그 밖의 위원회: 10분의 1 이상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3항은 ▲서울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며, 단서 규정으로 청년 위촉 의무에서 제외되는 위원회를 명시하고자 하는바, 이는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종합하여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③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

현 행	개 정 안
<p>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별사건을 다루는 위원회</li> <li>2. 외교·국방·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li> <li>3.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li> <li>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성격·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li> </ol>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4항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을 정할 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으로 규정된 절차를 조례에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p> <p>&lt;신 설&gt;</p>	<p>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p> <p>④ <u>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u></p>

-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5항(현행 조례 제10조제4항)은 “청년친화위원회”를 “제3항에 따른 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제3조제7호의 “청년친화위원회”의 정의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조례 내 용어 정비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④ 시장은 <b>청년친화위원회</b> 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10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⑤ <del>————제3항에 따른 위원회————</del>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 사항을 종합해 보았을 때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이 의무화됨에 따라 청년의 시정 참여가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음
- 다만, 청년 참여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위원회 설치 절차에 청년 위원 확보 방안 신설, 별지 제2호 ‘위원회 신설검토서(붙임2)’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 참여하는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고민과 노력, 정책적 지원 역시 있어야 할 것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 ⑤ 시장은 서울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다.

(4) 청년인재정보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2제1항과 제2항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청년의 시정 참여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청년인재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2제1항은 청년인재정보 수집·관리 목적을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제1항<sup>1)</sup>을 참조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목적을 종합적이고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2제2항은 청년인재정보 수집·관리 부서가 청년 위원 추천을 요청받으면 14일 이내에 답변하게 되어 있던 것을 요청에 협조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청년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수가 대폭 증가<sup>2)</sup>하게 되어 청년 위원 추천 수요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답변 기한 제한을 해제하여 적합한 인재를 찾고 추천하는 업무에 유연성과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음

현 행	개 정 안
제10조2(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b>지원하고,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을 위원으로 추천하기</b> 위하여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b>청년인재정보 수집·관리 부서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에서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b>	제10조2(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① _____ <b>지원하기</b> _____. ② <b>제1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부서는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b>

1)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2) 청년 의무위촉 위원회 수 : 130개 위원회 → 254개 위원회 (2024. 3. 기준) \* 의무위촉 제외 미반영

- 또한, 「청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정부가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청년DB)’를 구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에서는 ‘국가인재DB’, ‘여성인재DB’를 운영하고 있는바,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서 청년위원을 위촉할 시에는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서울미래인재DB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인재DB, 여성인재DB, 청년DB 등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인재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청년기본법 시행령」

#### 제20조의3(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및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본인으로부터 청년인재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보내도록 하거나, 제20조의4에 따른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0조의4(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등) ① 정부는 법 제15조의2 및 이 영 제20조의3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수집한 청년인재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인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 참고 : 각종 인재데이터베이스 현황

구분	국가인재DB	여성인재DB	청년DB	서울미래인재DB
운영기관	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미래청년기획단
도입시기	1999년	2011년	2023년	2019년
인재등록인원	35만 명	15만 명	1.1만 명	약 2,500 명

\* 국무조정실 청년DB는 서울시 미래인재DB를 벤치마킹하여 구축하였음

\*\* 청년DB 및 서울미래인재DB는 등록대상은 청년(19세~39세 )임

- 다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는 만큼 청년인재정보 수집 및 관리에 있어서 「청년기본법」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 「청년기본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면밀하게 살펴서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붙임3),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거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임

##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에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3. 9. 22.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청년의 시정 참여가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음
- 또한, 관련 법령보다 앞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시행<sup>3)</sup>되었기에 법령상의 용어나 조문이 일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와 조문의 괴리 등 혼선을 해결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정합성,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다만,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청년 위원 위촉이 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설치 절차에 청년 위원 확보 방안을 추가 규정하고, 청년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또한,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서 청년 위원을 위촉할 시에는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서울미래인재DB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인재DB, 여성인재DB 등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인재정보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는만큼 청년인재정보 수집·관리와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3)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2015. 1. 2. 제정·시행 \* 전국최초  
「청년기본법」 2020. 2. 4. 제정, 2020. 8. 5. 시행  
「청년기본법 시행령」 2020. 8. 4. 제정, 2020. 8. 5. 시행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요지: 없음

9. 기타필요한사항: 없음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b>7. “청년친화위원회”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중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개별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를 제외한다.</b></p> <p>8. (생략)</p>	<p>제3조(용어의 정의) _____</p> <p>1. ~ 6. (현행과 같음)</p> <p><b>&lt;삭제&gt;</b></p> <p>7. (현행 제8호와 같음)</p>
<p>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p> <p>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p>1. ~ 3. (생략)</p> <p><b>4. 청년친화위원회의 범위 및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b></p> <p><b>&lt;신설&gt;</b></p> <p><b>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p> <p>③ ~ ⑫ (생략)</p>	<p>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p> <p>1. ~ 3. (현행과 같음)</p> <p><b>4.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b></p> <p><b>5.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b></p> <p><b>6. (현행 제5호와 같음)</b></p> <p>③ ~ ⑫ (현행과 같음)</p>
<p>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p> <p>① ~ ② (생략)</p> <p><b>③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b></p> <p><b>&lt;신설&gt;</b></p> <p><b>&lt;신설&gt;</b></p>	<p>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b>③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b></p> <p><b>1. 개별사건을 다루는 위원회</b></p> <p><b>2. 외교·국방·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b></p>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④ 시장은 <b>청년친화위원회</b>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10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⑥ (생략)</p> <p>제10조2(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p> <p>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b>지원</b> 하고, <b>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을 위원으로 추천하기</b> 위하여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p> <p>② <b>청년인재정보 수집·관리 부서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에서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b></p> <p>③ (생략)</p>	<p>3.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p> <p>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성격·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p> <p>④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p> <p>⑤ <u>제3항에 따른 위원회</u></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p>⑦ (현행 제6항과 같음)</p> <p>제10조2(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p> <p>① <u>지원</u> 하기</p> <p>② <b>제1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부서는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b></p> <p>③ (현행 제3항과 같음)</p>

□ 위원회 신설검토서

위원회명	
설치근거	※ 법령상 위원회일 경우 법령, 조례 모두 기재
설치목적	○ -
설치 필요성	
위원회 성격	자문( ), 심의( ), 의결( ) ※ 여러 성격 동시에 가질 경우 중복 표기
설치요건 부합 여부	○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부합여부 상세 기재
기존 위원회와 중복·유사 여부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존재 (유□, 무□)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능 유사한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유□, 무□)
상설위원회 설치요건	○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부합여부 상세 기재
위원회 필수 구성내용을 조례에 반영 여부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input type="checkbox"/> 위원의 구성 및 임기(임기는 상설위원회만 규정) <input type="checkbox"/> 존속기한(법령상 강행 위원회 제외) ※ 존속기한 5년이내 <input type="checkbox"/> 위원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input type="checkbox"/> 회의 소집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input type="checkbox"/>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input type="checkbox"/>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첨부자료 (담당부서만 제출)	- 관련 조례 제·개정안 - 위원회 설치요건 부합여부 판단을 위한 증빙자료 등



## 1.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 제15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②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공직후보자등"은 "청년인재"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준용 규정

※ "인사혁신처장"은 "시장"으로, "공직후보자등"은 "청년인재"로 본다

### 「국가공무원법」

####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 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해당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청년기본법 시행령」

#### 제20조의3(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및 절차)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청년인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청년인재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1. 성명, 성별, 나이 및 연락처
  2. 학력, 경력, 자격사항 및 상훈
  3. 현직·전직 직위
  4. 전문분야 또는 관심분야
  5. 주요 저서 및 논문 등의 발간 이력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본인으로부터 청년인재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보내도록 하거나, 제20조의4에 따른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수집할 때에 수집한 정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본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 제20조의5(청년인재정보의 보호 등)

- ①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③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정정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정정 또는 폐기하고,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제공받거나 직접 열람한 기관이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직접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상열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24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4월 03일

발 의 자: 서상열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영옥,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혜영,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영한, 서준오, 서호연,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민석, 이병운, 이봉준,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종태, 이희원, 임만균, 최민규,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35명)

## 1. 제안이유

- 2023년 9월 22일 시행된 「청년기본법」 과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에 반영하여 위원회 청년 참여 의무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청년인재정보 수집·관리 부서의 인재추천 사무 범위를 일부 조정하여 사업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청년친화위원회의 정의를 삭제함(안 제3조제7호)
- 나.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각종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과 청년위촉이 곤란한 위원회의 범위를 심의·조정 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 다. 서울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1/10 이상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3/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 라. 서울시 각종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을 정할 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함(안 제10조의제4항)
- 마. 청년인재정보 수집 관리 부서가 인재추천요청을 받았을 때 협조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5.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1. 개별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2. 외교·국방·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
3.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성격·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청년친화위원회”를 “제3항에 따른 위원회”로 한다.

- ④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을 위원으로 추천하기”를 “지원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부서는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6. (생 략)</p> <p>7. <u>“청년친화위원회”란 서울특별시</u> <u>별시의 각종 위원회 중 위촉직</u> <u>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u> <u>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를</u> <u>말하며, 개별사건을 다루거나</u> <u>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되는</u> <u>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u> <u>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u> <u>회를 제외한다.</u></p> <p>8. (생 략)</p> <p>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p> <p>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p>1. ~ 3. (생 략)</p> <p>4. <u>청년친화위원회의 범위 및 위</u> <u>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u></p> <p>&lt;신 설&gt;</p> <p>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3조(용어의 정의)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7. (현행 제8호와 같음)</p> <p>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별 청</u> <u>년 위촉 비율</u></p> <p>5. <u>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u> <u>는 위원회의 범위</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③ ~ ⑫ (생략)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1. 개별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2. 외교·국방·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

3.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성격·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④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





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  
에 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및 수집된 정보의 보호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요청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3항과 같음)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5.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1. 개별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2. 외교·국방·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
3.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성격·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청년친화위원회”를 “제3항에 따른 위원회”로 한다.

- ④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을 위원으로 추천하기”를 “지원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부서는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6. (생 략)</p> <p>7. <u>“청년친화위원회”란 서울특별시</u> <u>별시의 각종 위원회 중 위촉직</u> <u>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u> <u>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를</u> <u>말하며, 개별사건을 다루거나</u> <u>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되는</u> <u>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u> <u>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u> <u>회를 제외한다.</u></p> <p>8. (생 략)</p> <p>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p> <p>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p>1. ~ 3. (생 략)</p> <p>4. <u>청년친화위원회의 범위 및 위</u> <u>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u></p> <p>&lt;신 설&gt;</p> <p>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3조(용어의 정의)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7. (현행 제8호와 같음)</p> <p>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별 청</u> <u>년 위촉 비율</u></p> <p>5. <u>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u> <u>는 위원회의 범위</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③ ~ ⑫ (생략)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1. 개별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2. 외교·국방·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

3.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성격·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④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

④ 시장은 청년친화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10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생략)

제10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을 위원으로 추천하기 위하여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청년인재정보 수집·관리 부서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에서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

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⑤ ----- 제3항에 따른 위원회

-----  
-----  
-----  
-----  
-----  
-----  
-----  
-----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0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① -----  
---- 지원하기 -----  
-----  
-----

② 제1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부서는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을

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  
에 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및 수집된 정보의 보호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요청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3항과 같음)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제2항제5호 및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서울시 각종 위원회별 청년 위촉비율 및 위촉 제외,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제4항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